



제2935호 2024. 2. 16.(금)

www.jeonbuk.go.kr.

조 례

- 조례 제5440호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
- 조례 제5441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 조례 제5442호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9
- 조례 제544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례 제5444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조례 제5445호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14
- 조례 제544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17
- 조례 제5447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19
- 조례 제5448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조례 제5449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24
- 조례 제5450호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조례 제5451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27
- 조례 제5452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조례 제5453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31
- 조례 제5454호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조례 제5455호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34
- 조례 제5456호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조례 제54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조례 제5458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조례 제545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조례 제546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조례 제5461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58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고 시

- 고시 제2024-32호 용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77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4-7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0
- 입법예고 제2024-8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4
- 입법예고 제2024-9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20

공 고

- 공고 제2024-231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141
- 공고 제2024-235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변경 등록 공고 142
- 공고 제2024-240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143
- 공고 제2024-24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44

시 군

- 군산시 공고 제2024-30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46
- 완주군 고시 제2024-14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용진 소로2-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48
- 진안군 고시 제2024-24호 진안 군계획시설(체육공원.월랑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50
- 임실군 공고 제2024-190호 임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152

기 타

-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4호 공인 폐기 공고 15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0호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 마.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목적기반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 및 핵심 기술의 구현에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개발·실증·제작·생산·구매·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기술 및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 관련 서비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업·연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실증 지원
2. 미래자동차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3.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육성
4. 미래자동차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조성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

-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7.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
- 8. 미래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 2.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1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군산시 오식도동 1082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2. 에너지중점산업 육성 및 지원
3.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 실태조사 지원
4. 에너지특화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5.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국제교류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내 연관 기업 유치 활동
8.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입주 공간 임대와 관리업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체의 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임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을 센터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기업을 센터에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기업의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심사만을 거쳐 해당 기관·기업을 센터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집중유치업종)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에 대해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입주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대부료)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서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센터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사용료 등 수입금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1조 또는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의 관리) 수탁기관은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적용 법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한다.

- 1.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2호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연구
- 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 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 2.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노동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노무제공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 7.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8. 노무제공자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 9. 노무제공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산정된 적정 인건비에 대한 사항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노무제공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비용 또는 시간을 투자한 경우 그 비용과 시간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노무제공자가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부문에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4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업무수행과정”을 “업무수행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용역 기타”를 “용역,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5호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1.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
-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자치도에 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프리랜서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 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사례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산정된 적정 인건비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프리랜서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프리랜서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연구·조사·준비 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과의 표준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적

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부문에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안전·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2. 프리랜서 노동조건·노동환경 개선
3. 프리랜서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4.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1조(기관·법인·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프리랜서 피해 사례 조사·보호를 위한 캠페인
5. 전북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진방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법인·단체 등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7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 도민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8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단체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을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도지사”를 “운영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신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50% 감경대상자 기준(제9조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9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학생선수”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 3. “원로 체육인”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
-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방법·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0호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1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자치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4. 전북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2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추진하도록 노력”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내”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온한”을 “안전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들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제목“(지원의 범위)”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본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노동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 5.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 6. 관리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제6조의 제목“(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을“(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결”을 “체결 및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생협약을 체결한”을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한”으로, “협약이행률 등을 점검할 수 있다”를 “이행률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리종사자의 임기)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사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종사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인권보장”을 “인권보장, 고용현황”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2년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등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종사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관리종사자 상담실의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3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참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4호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우수 연구인력”을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5호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연합회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2. 학교4에이치 교육훈련, 과제활동 지원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사업
4. 4에이치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5.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산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6호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적·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연구와”를 “연구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유농업”을 “농업인 단체 및 치유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3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등)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센터(이하 “치유농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 치유농업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공급 조율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치유농업사의 배치) 도지사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치유농업센터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력)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란 법 제1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7. “교육활동침해”란 보호자, 학생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4항 중 “관할교육청”을 “관할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반복된 훈계”를 “학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학교장은 법령”을 “법령”으로, “징계”를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지체없는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2. 교육활동 침해 발생 즉시 교육활동 침해 대상 분리 및 교육적 조치
3. 민원 대응체계 구축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
5. 교원이 교육활동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특별휴가나 병가 사용

제10조의 제목“(설회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 ①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미리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제목“(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를“(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으로, “치유를”을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치유지원센터”라 한다)”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청구와 보호조치를”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대한 지원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야 하며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를 “해야 하며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사들”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로 한다.

제16조 중 “소속 하”를 “소속하”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년법 제4조제3항”을 “「소년법」 제4조제3항”으로,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따라 교육활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국장”을 “전북교육인권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보칙”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관할학교 교육활동 보호) 교육장은 관할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1호, 제27조의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교권”이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權利)를 말한다.</p> <p>3. (생 략)</p> <p>4. “교육활동침해”란 제2호에 따라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5. (생 략)</p> <p>제3조(기본 원칙) ① ~ ③ (생 략)</p> <p>④ 교원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나 관할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p> <p>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 ③ (생 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보호자”란 법 제1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p> <p>6. “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p> <p>7. “교육활동침해”란 보호자, 학생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3조(기본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관할교육지원청 -----.</p> <p>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반복된 훈계에도 정상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⑦·⑧ (생략)

제8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생략)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장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제9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피해교원 보호
2. 교육감 보고
3. 교육활동침해 발생 즉시 침해대상을 학교장이 피해교원과 분리·보호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
5. 교원이 교육활동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특별휴가나 병가 사용

<신설>

④ 학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

----- 법령-----
----- 조치-----.

⑤ (현행과 같음)

⑥ ----- 보호자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련-----
-----.

제9조(교육감의 책무) ① -----
----- 마련-----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지체없는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2. 교육활동 침해 발생 즉시 교육활동 침해 대상 분리 및 교육적 조치
3. 민원 대응체계 구축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
5. 교원이 교육활동침해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특별휴가나 병가 사용

제10조(설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등)는 교원의 동의 없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신 설>

제12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치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유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교원치유를 비롯하여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둔다.

제13조(치유지원센터의 기능) ① 치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0조(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미리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⑤ -----
----- 보호자-----.

제11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

---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① -----
--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
-----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
을 ----- 교육활동보호센터-----.

② 교육활동보호센터-----
-----.

제13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① 교육활동보호센터-----.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①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은 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청구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해야하며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제15조(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보호조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건
- 2. 3. (생략)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2. 학생의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및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3. 4. (생략)

제14조(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① -----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대한 지원을 -----
-----.

② -----
----- 해야 하며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① ----- 교원-----
-----.

② -----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 소속-----
-----.

제17조(위원회 심의사항) -----
-----.

-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2. 3.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

-----.

- 1. 보호자 -----
-----.
- 2. -----

----- 「소년법」 제4조제3항-----
----- 따라 교육활동

-----.
- 3. 4.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생략)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3. 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 8. (생략)

제4장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제26조(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7조(지원단 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청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9조(임기) ① 제28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

제19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전
북교육인권센터장-----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

----- 보호자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제27조(관할학교 교육활동 보호) 교육장은 관할학교에 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단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7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우선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상담료) 교원이 제33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제36조 (생략)

제26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
-----.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8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책임과 의무)”를“(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6조의 제목“(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규교과 시간 이외”를 “교육과정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로,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각각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를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정 외”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정규교과 시간 이외”를 “교육과정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규교과 이외”를 “교육과정 외의”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언제든지 열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을 “되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권옹호관”을 각각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책임과 의무) ①·② (생 략)</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p> <p>④ (생 략)</p> <p><신 설></p> <p>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학생은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p> <p>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p> <p>제6조(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 교육과정 외의 ----- ----- ② ----- 방과후학교 -----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 ----- ③ -----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정 외 ----- ----- -----</p>
<p>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② (생 략)</p> <p><신 설></p>	<p>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② (생 략)</p> <p><신 설></p>	<p>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p>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생략)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신설>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 ④ (생략)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과정 외의 -----
-----.

③ -----
----- 교육과정 외의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
----- 열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되 -----

-----.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
----- 인권담당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담당관 -----

-----.

<삭 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5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7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11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50명

제3조 (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470				
정 무 직 계	1		1		
교 육 감	1		1		
특정직(교육전문직) 계	350				
장 학 관 · 교 육 연 구 관 (4 급 상 당 이 상)	37		22	15	
장 학 관 · 교 육 연 구 관 및 장 학 사 · 교 육 연 구 사	313				
일 반 직 계	4,100				
3 급	4		4		
3 · 4 급	2		2		
4 급	23	1	21	1	
5 급 이 하 소 계	4,059				
전 문 경 력 관 소 계	12				
연 구 직 계	15				
연 구 사 소 계	15				
별 정 직 계	4				
5 급 상 당 이 하 소 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09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4,470명 -----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065명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 ----- ----- 4,111명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35명						3. ----- 350명 -----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 학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 학교
총 계		4,409					총 계		4,47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특정직 계		335					특정직 계		350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이상)		38		23	15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상당 이상)		37		22	15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3				
일반직 계		4,054					일반직 계		4,100				
3급		4		4			3급		4		4		
3·4급		2		2			3·4급		2		2		
4급		23	1	21	1		4급		23	1	21	1	
5급 이하 소계		4,013					5급 이하 소계		4,059				
전문경력관 소계		12					전문경력관 소계		12				
연구직 계		15					연구직 계		15				
연구사 소계		15					연구사 소계		15				
별정직 계		4					별정직 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각종 학교”를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학교”를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2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관할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9호, 제30호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속학교”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u>각종 학교</u>를 말한다.</p> <p>2. “관할학교”란 소속 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u>특수학교</u>를 말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u>각종학교</u>-----.</p> <p>2. ----- -----<u>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8. (생략)</p> <p>9. 관할구역 공·사립 <u>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의 학생생활교육, 건강교육, 급식, 전산,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기획 및 총괄업무 제외)</p> <p>10.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제1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관한 사항</p> <p>11.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제22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p> <p>12. ~ 28.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u>----- -----</p> <p>10.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제17조 제17항----- -----</p> <p>11.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제23조 제2항-----</p> <p>12. ~ 28. (현행과 같음)</p> <p>29.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u>」 제32조에 따른 관할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p> <p>30.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u>」 제35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p>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2.)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1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내”를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를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제7조(「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4조(「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회”를 “전북특별자치도지회”로 한다.

제15조(「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6조(「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의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9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교육청</u>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인터넷 매체”란 <u>전라북도교육청</u>,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매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1.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기자단”이란 <u>전라북도교육감</u>,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및 각급 학교(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정책을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p>	<p>3.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 ----- -----.</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포상) 교육감은 <u>전라북도</u> 교육발전을 위해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제7조(포상)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제2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u></p>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라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0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 4.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3. (생 략)

- ④·⑤ (생 략)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8조(지원대상자) -----
----- 전북특별자치도 -----

제10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2.·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라북도지사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제3조 「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에 관련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 ----- -----</p>
<p>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p>	<p>제3조(지원 대상)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4조(지원 방법)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지원 방법) ①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4조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전라북도 안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2.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2. ----- ----- ----- <u>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u> ----- -----</p>

<p>3. (생 략)</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겪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p> <p>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p> <p>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u>전라북도교육청</u>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u>전라북도</u>,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①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 ----- <u>전북특별자치도</u>----- -----</p>
--	---

제5조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u>전라북도</u>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p> <p>제4조(지원 방법) ①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3조(지원 대상)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4조(지원 방법) ①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란 「<u>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u>」 및 「<u>국립학교 설치령</u>」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u>사립학교법</u>」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u>」 ----- ----- ----- -----.</p> <p>2. 3. (현행과 같음)</p>

제7조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조리사·조리원), 위생원 등을 말한다.</p> <p>1. 「<u>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p> <p>2. (생략)</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제8조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u></p> <p>제2조(정의) -----</p>

<p>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농촌유학”이란 <u>전라북도</u>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u>전라북도</u>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5. “농촌유학 운영학교”란 <u>전라북도교육감</u>이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교육발전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전북특별자치도</u>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5.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	---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교육청</u>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p> <p>제4조(센터의 설치)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p>

제10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

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전라북도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생략)

제10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전라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

- 1. 2. (현행과 같음)
- 3. -----
- 전북특별자치도 -----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

-----.

- 1. 전북특별자치도 -----

- 2. ----- 전북특별자치도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관 간 협의) ① -----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

② -----
----- 전북특별자치도 -----

<p>있다.</p> <p>제12조(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u> 내에 있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p> <p>제12조(사립학교에의 적용)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	---

제11조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학교”란 <u>전라북도</u>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3.·4. (생 략)</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u>전라북도</u>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위탁) ① (생 략)</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u>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9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 -----.</p>

제12조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전라북도교육청</u>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 ----- ----- ----- ----- -----</p>
--	--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u>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관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14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u></p> <p>제9조(권한의 위탁)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u>전라북도지회</u>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u></p> <p>제9조(권한의 위탁) ① ----- ----- <u>전북특별자치도지회</u> ----- ----- ----- -----</p>

<p>자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제15조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전라북도</u> 내에서 생산된 지역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u>전라북도</u>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4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u>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u>전라북도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표창) ① (생략)</p> <p>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u>전라북도 교육·학</u></p>	<p><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제2조(정의) -----.</p> <p>1. -----</p> <p>----- <u>전북특별자치도</u> -----.</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적용 대상 기관)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표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교</u></p>

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6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u>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u>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u>전라북도</u>(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하며, <u>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전라북도의회</u>(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u>전라북도의회</u>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8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8. (생략)</p>	<p><u>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제2조(정의) ----- -----.</p> <p>1.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p> <p>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 ----- ----- <u>전북특별자치도의회</u> -----.</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 8. (현행과 같음)</p>

9.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전세금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③ (생략)

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 등(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계약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전북특별자치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정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32호

용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이·치수 기능보강과 홍수방어능력 증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용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1. 하천공사의 명칭: 용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하천공사의 목적: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이·치수 기능보강과 홍수방어능력 증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나. 사업개요: 하천정비 L=3.2km, 교량 12개소, 여울 10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 소양면 소양천(지방) 합류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나.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2024. 3. ~ 2026. 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1
7. 실시설계도서
 -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가. 사업비: 16,773백만원(도급 10,870, 관급 5,354, 폐기물 549)
 - 나. 자금조달계획서: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 비치

9. 공사에정공정표: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관할 완주군에서 관리
11.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해당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붙임2
13. 기 타 : 관계서류(계획도면, 토지조서 등)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4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조서

□ 토 지

연번	토 지 소 재 지						현실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완주	소양	신원	8-1	임	임	1,290	1,290	정순자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1103호			
2	"	"	"	10-5	전	전	1,202	1,202	육옥순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9			
3	"	"	"	10-6	전	전	163	163	장용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4(백석동)			
4	"	"	"	10-7	전	전	178	178	권용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7			
5	"	"	"	11-3	답	답	276	276	윤성우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길 117	전주김제완주축산 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6	"	"	"	11-1	답	답	118	118	윤성우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길 117	전주김제완주축산 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7	"	"	"	11-2	구	구	332	332	완주군				
8	"	"	"	12-3	답	답	379	379	파평윤씨판도 공파29세광환 중중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윤유두(대표)		
9	"	"	"	12-4	답	답	5	5	파평윤씨판도 공파29세광환 중중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윤유두(대표)		
10	"	"	"	12-5	답	답	49	49	파평윤씨판도 공파29세광환 중중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윤유두(대표)		
11	"	"	"	12-6	구	구	15	15	파평윤씨판도 공파29세광환 중중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윤유두(대표)		
12	"	"	"	12-7	답	답	84	84	파평윤씨판도 공파29세광환 중중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윤유두(대표)		
13	"	"	"	16-1	전	전	744	7	황홍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4	"	"	"	16-3	전	전	212	212	황홍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5	"	"	"	18-5	답	답	41	41	조현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4동 904호 (중화산동2가한신코아아파트)			
16	"	"	"	20-4	전	전	441	441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 안고을우성아파트)			

연번	토 지 소 재 지					현실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7	"	"	"	20-5	전 전	44	44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호 (인후동1가 안고을우성아파트)			
18	"	"	"	20-3	전 전	124	124	전북				
19	"	"	"	21-1	천 전	718	718	박계환	전북 군산시 현충로 23, 701호(나운동, 그린은파파크앤션)			
20	"	"	"	21-4	답 답	119	119	박계환 외 6인	전북 군산시 현충로 23, 701호(나운동, 그린은파파크앤션)			
21	"	"	"	21-3	천 천	85	85	전북				
22	"	"	"	23-6	전 전	888	888	이승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5	소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3	"	"	"	24-5	답 답	185	185	전북				
24	"	"	"	25-3	답 답	48	48	윤성운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			
25	"	"	"	25-4	구 구	11	11	국(건설교통 부)				
26	"	"	"	25-5	답 답	12	12	백승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41-4			
27	"	"	"	29-5	전 전	8	8	유미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37			
28	"	"	"	29-6	전 전	2	2	유미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37			
29	"	"	"	30	천 천	1,807	1,807	육순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81-11			
30	"	"	"	30-1	천 도	435	435	김학범				
31	"	"	"	30-3	천 도	3	3	김학범				
32	"	"	"	30-4	천 전	148	148	육순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81-11			
33	"	"	"	30-5	천 답	35	35	육순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81-11			
34	"	"	"	31-9	천 전	887	887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35	"	"	"	31-3	천 전	172	172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36	"	"	"	31-10	답 답	89	89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37	"	"	"	31-5	천 전	274	274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38	"	"	"	31-7	천 천	168	168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39	"	"	"	31-8	천 천	128	128	박형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40	"	"	"	33-3	천 천	27	27	방채현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77 301동 202호(장당동우미이노 스빌(0))			
41	"	"	"	34	임 임	674	674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42	"	"	"	34-1	임 임	295	295	완주군				

연번	토지소재지					현직이용 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3	완주	소양	신원	35-3	답	답	47	47	방채현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77 301동 202호(장당동우미이노 스빌(아))		
44	"	"	"	36-5	답	답	56	56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45	"	"	"	36-6	전	전	39	39	서경희 외 1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3길 12-4 401호(금암동)		
46	"	"	"	37	천	잡	18	18	이화섭	전주 부대정정 6정목 34		
47	"	"	"	37-1	천	천	555	555	이화섭	전주 부대정정 6정목 34		
48	"	"	"	37-2	천	전	58	58	이화섭	전주 부대정정 6정목 34		
49	"	"	"	38-8	천	전	82	82	허수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76번길 13	소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0	"	"	"	38-4	천	천	42	42	완주군			
51	"	"	"	38-9	천	천	154	154	강덕삼			
52	"	"	"	38-6	천	천	24	24	완주군			
53	"	"	"	38-7	천	천	275	275	강덕삼			
54	"	"	"	71-4	대	도	15	15	유선례 외 2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		
55	"	"	"	72-2	전	전	73	73	윤태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장승배기로 145, 광진공전아파트 7동 205호		
56	"	"	"	73-3	대	대	57	57	이성욱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4	소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7	"	"	"	74-2	답	답	69	69	배진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8동 1305호 (평화동1가코오롱아파 트)		
58	"	"	"	75-19	답	답	135	135	배진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8동 1305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59	"	"	"	75-20	답	답	10	10	송희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06동 1301호 (호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60	"	"	"	75-12	답	답	87	87	배수영 외 1인	전북 익산시 선화로13길 62 101동 1110호 (모현동1가 배산제일아파트)		
61	"	"	"	79-5	답	답	11	11	이후승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5, 111동 1301호(죽백동, 평택소사벌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 티)		
62	"	"	"	산84-4	임	임	36	36	설충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315 대아청산 아파트가-802		
63	"	"	"	산84-5	임	임	333	333	전북			
64	"	"	"	산85	임	임	10,501	15	이후승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5, 111동 1301호(죽백동, 평택소사벌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 티)		
65	"	"	"	산106-6	임	임	705	705	유완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8 102동 2202호 (쌍암동중흥에스클래스 리버시티)		
66	"	"	"	산107-21	임	임	391	391	국(산림청)			

연번	토지소재지					실업률 상 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7	"	"	"	산108-1	임	임	1,673,200	1,447	국(산림청)			
68	"	"	"	산108-22	임	임	68	68	장용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4(백석동)		
69	"	"	"	산108-23	임	임	225	225	장용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4(백석동)		
70	"	"	"	산116-1	임	임	1,003	1,003	장승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5-3 감나무골 대우 대창아파트 104동 503호		
71	"	"	"	산119-1	임	임	18	18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 안고을우성아파트)		
72	"	"	"	산127-2	임	임	212	212	김진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02-75		
73	"	"	"	산127-3	임	임	219	219	김진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02-75		
74	"	"	"	산127-4	임	임	239	239	김진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02-75		
75	"	"	"	산131-1	임	임	203	203	조양임씨11세손탕 공종중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6동 506호	임광순(대표)	
76	"	"	"	산131-2	임	임	625	625	조양임씨11세손탕 공종중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6동 506호	임광순(대표)	
77	"	"	"	산132-1	천	천	126	126	완주군			
78	"	"	"	산132-4	임	임	1,014	1,014	전주류씨호조판서 공16대손현파중 중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065		
79	"	"	"	산132-5	임	임	65	65	완주군			
80	"	"	"	산154-1	임	임	66,942	27	홍지준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4로 36(과천동)		
81	"	"	"	산154-7	임	임	24	24	홍지준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4로 36(과천동)		
82	"	"	"	539-1	도	도	64	23	완주군			
83	"	"	"	539-6	대	대	848	10	완주군			
84	"	"	"	543-1	천	천	889	889	완주군			
85	완주	소양	신원	543-2	천	천	154	154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완주군산림조합 (근저당권)	
86	"	"	"	544-6	전	전	15	15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완주군산림조합 (근저당권)	
87	"	"	"	544-7	전	전	628	628	국(기획재정부)			
88	"	"	"	544-8	구	구	6	6	국(건설교통부)			
89	"	"	"	544-5	구	구	13	13	국(국세청)			
90	"	"	"	545-4	임	임	1,339	551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연번	토 지 소 재 지					관공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91	"	"	"	545-15	임	임	326	326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92	"	"	"	547-2	임	임	199	199	국(기획재정부)			
93	"	"	"	547-3	임	임	23	23	국(기획재정부)			
94	"	"	"	547-4	임	임	155	155	국(기획재정부)			
95	"	"	"	547-5	구	구	19	19	국(농림부)			
96	"	"	"	548-14	대	대	25	25	박상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3-5	소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7	"	"	"	548-15	답	답	24	24	장정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석소3길 15 (우아동2가)		
98	"	"	"	555-2	천	천	63	63	완주군			
99	"	"	"	555-4	천	잡	315	315	서미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동1004호(서신동강 나무골대우대창아파트)		
100	"	"	"	555-5	천	잡	3	3	서미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동1004호(서신동강 나무골대우대창아파트)		
101	"	"	"	555-6	천	천	53	53	완주군			
102	"	"	"	556-4	천	잡	101	101	서미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동1004호(서신동강 나무골대우대창아파트)		
103	"	"	"	566-1	전	전	244	244	강속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3 108동 1602호 (인후동1가, 워브어울림아파트)	인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04	"	"	"	567-1	구	구	125	125	완주군			
105	"	"	"	568-4	답	답	16	16	김상선	51		
106	"	"	"	568-6	답	답	115	115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107	"	"	"	569-1	천	천	111	111	이화익			
108	"	"	"	569-2	천	전	146	146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109	"	"	"	570-3	전	전	1,501	1,501	국(기획재정부)			
110	"	"	"	570-7	구	구	148	148	완주군			
111	"	"	"	570-8	답	답	891	891	국(기획재정부)			
112	"	"	"	570-9	답	답	221	221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연번	토 지 소 재 지					현장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13	"	"	"	570-10	전 전	983	983	국(기획재정부)				
114	"	"	"	570-11	답 답	257	257	국(기획재정부)				
115	"	"	"	571-1	구 구	42	42	유영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 효자주공아파트3단지 113-102			
116	"	"	"	571-2	천 천	97	97	유영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 효자주공아파트3단지 113-102			
117	"	"	"	571-3	천 천	410	410	완주군				
118	"	"	"	571-4	천 전	265	265	유영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22 일성아파트 102-1303			
119	"	"	"	572-2	답 답	48	48	윤태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아파트 7동 205호			
120	"	"	"	573-2	답 답	62	62	이후승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5, 111동 1301호(죽백동, 평택소사벌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 티)			
121	"	"	"	576	임 임	389	389	송경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22			
122	"	"	"	576-1	임 임	480	480	송경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22			
123	"	"	"	577-1	구 구	750	750	완주군				
124	"	"	"	577-2	답 전	26	26	김종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동 1003호			
125	"	"	"	577-3	답 전	74	74	김종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동 1003호			
126	"	"	"	577-4	답 답	769	769	김종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동 1003호			
127	"	"	"	578-1	천 천	176	176	전익씨대사성공 파반관리종중	완주군 봉동읍 울소리 666			
128	"	"	"	582-2	천 천	171	171	정응국	전주부 대정정 7경목 31번지			
129	"	"	"	582-3	대 대	227	227	이영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82			
130	"	"	"	583-1	전 전	127	127	김종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동 1003호			
131	완주	소양	신원	583-2	전 전	5	5	김종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3-1 신일아파트 102동 1003호			

연번	토 지 소 재 지					관공여상 현인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32	"	"	"	685-3	답	답	750	750	전북			
133	"	"	"	685-4	천	천	609	609	전북			
134	"	"	"	685-5	천	천	628	628	전북			
135	"	"	"	685-6	답	답	368	368	유승록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54		
136	"	"	"	685-7	천	천	433	433	김희환 외 1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0		
137	"	"	"	685-8	천	천	440	440	홍지준 외 1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2-3 현대아파트 501동 502호		
138	"	"	"	687-4	답	답	105	105	전북			
139	"	"	"	687-6	답	답	101	101	김명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331-2		
140	"	"	"	687-7	도	도	237	237	박오봉	전주군 전주면 청수정 266		
141	"	"	"	687-8	도	도	290	290	국(건설부)			
142	"	"	"	687-9	도	도	151	151	국(건설교통부)			
143	"	"	"	689-9	답	답	3	3	완주군			
144	"	"	"	689-11	답	답	66	66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145	"	"	"	689-12	대	대	182	182	완주군			
146	"	"	"	689-13	대	대	3	3	완주군			
147	"	"	"	690-3	답	답	31	31	완주군			
148	"	"	"	690-5	답	답	87	87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149	"	"	"	691-7	답	답	16	16	완주군			
150	"	"	"	691-9	답	답	83	83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151	"	"	"	692-1	천	천	217	217	전북			

연번	토 지 소 재 지					관공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52	"	"	"	692-2	천답	90	90	황태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81(효자동3가)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53	"	"	"	694-6	도	50	50	전북				
154	"	"	"	694-8	도	3	3	완주군				
155	"	"	"	694-9	도	19	19	전북				
156	"	"	"	694-10	답	81	81	전북				
157	"	"	"	694-11	전	861	861	전북				
158	"	"	"	694-13	도	44	44	전북				
159	"	"	"	694-14	답	30	30	완주군				
160	"	"	"	694-16	답	100	100	황태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347-9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61	"	"	"	694-17	전	213	213	완주군				
162	"	"	"	694-18	전	173	173	황태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347-9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63	"	"	"	702-4	답	33	33	완주군				
164	"	"	"	702-6	도	7	7	황진문	545			
165	"	"	"	702-8	도	7	7	완주군				
166	"	"	"	702-10	답	13	13	완주군				
167	"	"	"	702-11	도	4	4	완주군				
168	"	"	"	703-3	전	13	1	임종린	초포면 송전리 531			
169	"	"	"	703-5	전	7	7	임종린 외 2인	전북 전주시 호성동 3가 531			
170	"	"	"	703-8	도	22	22	임종린	초포면 송전리 531			
171	"	"	"	703-9	도	11	11	완주군				

연번	토 지 소 재 지					현 정 이 용 상 황	전 체 면 적 (㎡)	편 입 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72	"	"	"	703-10	전 전	전 전	38	38	임종린	초포면 송전리 531		
173	"	"	"	710-4	답 답	답 답	14	14	임종린 외 2인	전북 완주군 초포면 송전리 531		
174	"	"	"	710-6	답 답	답 답	137	137	임종린	초포면 송전리 531		
175	"	"	"	710-7	도 도	도 도	7	7	임종린	초포면 송전리 531		
176	"	"	"	710-8	도 도	도 도	11	11	완주군			
177	"	"	"	711-1	전 전	전 전	74	74	박길룡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0		
178	"	"	"	711-4	도 도	도 도	61	61	박제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77		
179	"	"	"	711-5	도 도	도 도	17	17	박제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77		
180	"	"	"	711-6	도 도	도 도	20	20	완주군			
181	완주	소양	신원	711-7	전 전	전 전	184	184	전북			
182	"	"	"	711-8	전 전	전 전	111	111	전북			
183	"	"	"	711-9	전 전	전 전	536	536	전북			
184	"	"	"	711-10	도 도	도 도	22	22	박제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77		
185	"	"	"	711-12	전 전	전 전	183	183	완주군			
186	"	"	"	711-13	대 대	대 대	58	58	신원경노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0		
187	"	"	"	711-14	대 대	대 대	19	19	완주군			
188	"	"	"	712-1	전 전	전 전	42	42	전북			
189	"	"	"	712-2	전 전	전 전	120	120	김수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3-8		
190	"	"	"	713-1	천 천	천 천	438	438	전북			
191	"	"	"	713-2	천 도	천 도	8	8	이인기	전주면 대정정3정목 27		
192	"	"	"	726-11	도 도	도 도	37	37	국(건설부)			
193	"	"	"	726-16	대 대	대 대	12	12	김여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6-3		
194	"	"	"	726-17	대 대	대 대	48	48	김여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6-3		

연번	토 지 소 재 지					관공실 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95	"	"	"	727-4	도	도	24	24	유성필 외 1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626		
196	"	"	"	727-5	도	도	22	22	국(건설부)			
197	"	"	"	734-1	도	도	1,139	1,139	국(건설부)			
198	"	"	"	738-1	도	도	29	29	국(건설부)			
199	"	"	"	738-3	도	도	20	20	국(건설부)			
200	"	"	"	738-4	도	도	330	330	국(건설부)			
201	"	"	"	738-6	도	도	1,089	1,089	국(건설부)			
202	"	"	"	750-1	도	도	186	186	국(건설부)			
203	"	"	"	750-2	도	도	185	185	국(건설부)			
204	"	"	"	751	도	도	59	3	국(건설부)			
205	"	"	"	767-1	구	구	9,178	9,178	국(건설부)			
206	"	"	"	767-2	답	답	288	288	국(기획재정부)			
207	"	"	"	767-4	구	구	273	273	국(건설부)			
208	"	"	"	767-18	구	구	19,540	19,540	국(건설부)			
209	"	"	"	767-20	구	구	222	5	국(건설부)			
210	"	"	"	767-21	구	구	201	201	국(건설부)			
211	"	"	"	767-22	구	구	3,247	3,247	국(건설부)			
212	"	"	"	767-34	구	구	218	218	국(건설부)			
213	"	"	"	767-53	구	구	9,689	9,689	국(건설부)			
214	"	"	"	767-58	답	답	2	2	유미연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29		
215	"	"	"	767-59	구	구	1,221	1,221	국(건설부)			
216	"	"	"	767-61	구	구	114	114	국(건설부)			
217	"	"	"	767-62	구	구	5	5	국(건설부)			
218	"	"	"	767-63	구	구	12	12	국(건설부)			
219	"	"	"	767-69	구	구	210	210	국(기획재정부)			
220	"	"	"	767-70	구	구	348	348	국(기획재정부)			
221	"	"	"	767-71	구	구	7,296	7,296	국(건설부)			
222	"	"	"	767-72	구	구	1,331	1,331	국(건설부)			
223	"	"	"	767-75	구	구	103	103	국(건설부)			
224	"	"	"	767-76	구	구	114	114	국(건설부)			
225	"	"	"	767-77	구	구	61	61	국(건설부)			
226	"	"	"	767-78	구	구	9	9	국(기획재정부)			
227	"	"	"	776-1	도	도	53	53	국(건설부)			
228	"	"	"	777-2	도	도	244	244	국(건설부)			
229	"	"	"	778-1	도	도	127	127	국(건설부)			

지번	토지소재지					실업률 이상 현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등기부등본상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 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합계							99,1 33					

□ 물 건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 번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1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외	벗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단풍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느티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층층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기타수목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2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비닐하우스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동산이전비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3	완주	소양	신원	8-1	히말라야시다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편백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4	완주	소양	신원	767-18	돌탑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벗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반송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사철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주목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이팝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소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5	완주	소양	신원	767-18	출입문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소태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감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녹차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목련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꽃사과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반송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철쭉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느티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화살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살구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벚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때죽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주목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대추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라일락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히말라야시다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편백울타리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남천울타리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6	완주	소양	신원	10-6, 734-1	집수정	전기계량기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벚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이팝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무궁화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참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주목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단풍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느티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모과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반송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7	완주	소양	신원	10-5, 734-1	산딸기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종자용수목	꽃댕강, 덜꿩, 말채, 병꽃등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8	완주	소양	신원	10-7, 767-18	쥐똥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9	완주	소양	신원	767-18	병꽃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개나리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취퐁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복자기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10	완주	소양	신원	11-3	컨테이너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전기울타리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전기계량기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양봉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11	완주	소양	신원	12-7	전기울타리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집수정	전기계량기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12	완주	소양	신원	12-3	피칸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전기울타리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13	완주	소양	신원	767-18	층층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느티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백일홍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14	완주	소양	신원	산116-1	감나무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15	완주	소양	신원	767-18, 767-77	집수정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용수관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복숭아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대추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배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단풍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자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다래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매실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16	완주	소양	신원	767-18	꽃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편백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17	완주	소양	신원	767-18	북송아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철쭉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뽕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출입문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집수정	전기계량기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전기울타리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자연석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동산이전비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블루베리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아로니아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17	완주	소양	신원	767-18	소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화살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편백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비파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삼색버들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젠피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율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호두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소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두릅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뽕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주목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석류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18	완주	소양	신원	767-18	느티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가림막	철파이프조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19	완주	소양	신원	767-18	양봉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동산이전비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20	완주	소양	신원	767-18	간판	용문사	용문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21	완주	소양	신원	767-18, 20-4	컨테이너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울다리	출입문포함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수도시설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잔디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자연석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매실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아카시아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느티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철쭉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쥐똥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주목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편백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꾸지뽕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참죽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꽃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21	완주	소양	신원	767-18, 20-4	헛개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무화과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꽃사과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사과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오엽송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감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대추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복숭아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베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병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능소화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호두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화살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해송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체리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자두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소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배나무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구기자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아로니아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오미자		김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4, 101동 1010호 (인후동1가.안고을우성아파트)		
22	완주	소양	신원	23-6	비닐하우스	창고용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비닐하우스	창고용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컨테이너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비닐하우스	2동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전기계량기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매실나무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아로니아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주목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화살나무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병나무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젠티나무		허영식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5		
23	완주	소양	신원	31-5	밤나무		이동수	전북 소양면 반곡길 121		
23	완주	소양	신원	31-5	느티나무		이동수	전북 소양면 반곡길 121		
					백일홍		이동수	전북 소양면 반곡길 121		
24	완주	소양	신원	31-8	감나무		방수혁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11		
					자귀나무		방수혁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11		
					자두나무		방수혁	전북 소양면 반곡길 85-11		
25	완주	소양	신원	34	집수정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아로니아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주목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뽕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감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매실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대추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구지뽕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자두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호두나무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기타수목		정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13		
26	완주	소양	신원	767-1, 36-5	창고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동산이전비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전기계량기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수도시설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창고	경량철골조 천막지붕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울타리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감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고욤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대추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석류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매실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모과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아로니아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27	완주	소양	신원	767-1	차고	비닐하우스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웬스	출입문 포함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바닥포장	쇄석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전기계량기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수도계량기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정화조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관련시설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가로등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모과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감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장미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28	완주	소양	신원	767-1, 36-6	농막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 판별지붕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차양	판별지붕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컨테이너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28	완주	소양	신원	767-1, 36-6	동산이전비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지하수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가로등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울타리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복숭아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사과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자두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살구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블루베리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감나무		서민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00-17							
29	완주	소양	신원	25-5, 767-63	조경석 화단	수목포함	백승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41-4		
30	완주	소양	신원	767-16, 30-1	벚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느티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은행나무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개나리 울타리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31	완주	소양	신원	750, 30-2	수목울타리		이동수	전북 소양면 반곡길 121		
32	완주	소양	신원	30-1	매실나무		이동수	전북 소양면 반곡길 121		
33	완주	소양	신원	30-1	대추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두릅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34	완주	소양	신원	750-1, 767-4	차양	경량철골조 판별지붕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건사	경량철골조 판별지붕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담장	블록	윤성우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7		
35	완주	소양	신원	767-4	대추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벚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호두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소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감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기타수목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36	완주	소양	신원	767-4	주목		황용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3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수목울다리		향용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13		
37	완주	소양	신원	38-6	감나무		김병기	정읍시 상동 17-1 대림아파트 102-305		
38	완주	소양	신원	38-8	은행나무		한재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재방마을길 68-1		
39	완주	소양	신원	767-1, 37	축사	블럭조	한재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재방마을길 68-1		
					창고	블럭조	한재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재방마을길 68-1		
					차양	블럭조	한재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재방마을길 68-1		
					감나무	스레트지붕	한재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재방마을길 68-1		
40	완주	소양	신원	767-1, 37	뽕나무		윤태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아파트 7동 205호		
					팽나무		윤태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아파트 7동 205호		
					매실나무		윤태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아파트 7동 205호		
41	완주	소양	신원	767-1, 583-1	비닐하우스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동산이전비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자두나무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향나무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41	완주	소양	신원	767-1, 583-1	대추나무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42	완주	소양	신원	767-1	감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뽕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고욤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43	완주	소양	신원	577-4	참죽나무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취나물		강효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98		
44	완주	소양	신원	576, 73-3	자연석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체리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느릅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석류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앵두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뽕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키위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삼색버들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자두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다래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아로니아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매실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가죽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대추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감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고욤나무	백남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72			
45	완주	소양	신원	75-19	전기계량기	배진성	전북 전주시 평화로 181, 코오롱아파트 8동 1305호			
46	완주	소양	신원	767-1	수도시설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피칸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두릅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아로니아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무궁화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매실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배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사과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함박꽃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단풍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화살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쥐똥나무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라일락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말발도리	송기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1, 서신동아1차아파트 112동 201호			
47	완주	소양	신원	573-2	자작나무	소유주미상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3-9			
					주목	소유주미상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3-9			
48	완주	소양	신원	571-2, 572-2	집수정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병꽃나무	이육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49	완주	소양	신원	572-2	땅두릅	이후승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3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50	완주	소양	신원	569-2, 568-6	마사토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무궁화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50	완주	소양	신원	569-2, 568-6	취풍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취풍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꽃댕강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미선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명자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말채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불두화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도라지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51	완주	소양	신원	566-1	전기계량기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감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벗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편백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52	완주	소양	신원	767-1	가로등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편백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벗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피칸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감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고욤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53	완주	소양	신원	556-4, 555-4	정자	철골조 판벽지붕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화장실	벽돌조 석글지붕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적재함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바닥포장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느티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고욤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뽕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밤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대추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이팝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54	완주	소양	신원	산132-4	느티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팽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벗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느릅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두릅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회양목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55	완주	소양	신원	570-10	반송		이한태	전북 완주군 소양신원길 11-5		
					주목		이한태	전북 완주군 소양신원길 11-5		
56	완주	소양	신원	570-10	고로쇠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조팝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57	완주	소양	신원	570-3	관정	전기계량기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느릅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층층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58	완주	소양	신원	570-3, 570-8	조팝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개나리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59	완주	소양	신원	570-9, 570-11	집수정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감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59	완주	소양	신원	570-9, 570-11	대추나무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고사리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60	완주	소양	신원	767-53, 543-1	느티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불두화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감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산수유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피칸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회양목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고욤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두릅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이팝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꽃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편백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엄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대추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가죽나무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자연석		윤유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39		
61	완주	소양	신원	767-53	전기계량기		이육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85-23		
62	완주	소양	신원	545-13	복숭아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피칸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살구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감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대추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호두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63	완주	소양	신원	545-11	이팝나무		원경자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546		
64	완주	소양	신원	545-11, 547-2	개쉬땅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쥐똥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산철쭉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회양목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화살나무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65	완주	소양	신원	767-53, 543-1	감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팽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느릅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뽕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자귀나무		허길자	전북 소양면 반곡길 119		
66	완주	소양	신원	767-53	요목	남천, 꽃댕강, 조팝나무등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황매화		최옥란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56, 우성해오름아파트 103동 101호		
67	완주	소양	신원	767-53	은행나무		정은철	전북 소양면 반곡길 19		
					주목		정은철	전북 소양면 반곡길 19		
					철쭉		정은철	전북 소양면 반곡길 19		
68	완주	소양	신원	767-53, 548-14	창고	철파이프조강판지붕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컨테이너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건사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차고	철파이프조천막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동산이전비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68	완주	소양	신원	767-53, 548-14	지하수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계사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대문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메쉬웬스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수목올타리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주목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감나무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황금촉백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대추나무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아로니아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마가목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매실나무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중국단풍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탱자나무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남천올타리	진정숙	전북 소양면 반곡길 23-5			
69	완주	소양	신원	767-53, 548-14	감나무	소유자미상				
					대추나무	소유자미상				
					고욤나무	소유자미상				
					팽나무	소유자미상				
					쥐똥나무	소유자미상				
					느릅나무	소유자미상				
70	완주	소양	신원	767-53	은행나무	소유자미상				
					블루베리	소유자미상				
					아로니아	소유자미상				
					체리나무	소유자미상				
					두릅나무	소유자미상				
					앵두나무	소유자미상				
					대추나무	소유자미상				
					주목	소유자미상				
					매실나무	소유자미상				
					배나무	소유자미상				
					피칸나무	소유자미상				
					복숭아나무	소유자미상				
					자두나무	소유자미상				
					고욤나무	소유자미상				
71	완주	소양	신원	712-2	감나무	정봉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1			
					매실나무	정봉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1			
					사과나무	정봉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1			
72	완주	소양	신원	711-8, 712-1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73	완주	소양	신원	711-12	비닐하우스	전유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33-3			
					감나무	전유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33-3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대추나무			전유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33-3		
74	완주	소양	신원	711-9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75	완주	소양	신원	694-16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76	완주	소양	신원	767-71	감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77	완주	소양	신원	690-5	이동식 화장실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77	완주	소양	신원	690-5	대추나무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감나무			추종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6길 33번지		
78	완주	소양	신원	689-11, 689-12	향나무			유익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 서신쌍용아파트 601동 406호		
					감나무			유익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 서신쌍용아파트 601동 406호		
79	완주	소양	신원	689-12	대추나무			유익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 서신쌍용아파트 601동 406호		
					울나무			유익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 서신쌍용아파트 601동 406호		
80	완주	소양	신원	767-71	정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벚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복숭아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81	완주	소양	신원	687-3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팽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82	완주	소양	신원	685-6	컨테이너			유광열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30, 코아루2차 205동 803호		
					동산이전비			유광열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30, 코아루2차 205동 803호		
83	완주	소양	신원	685-4	느티나무			신원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7-3		
84	완주	소양	신원	767-53	표지석	반곡마을		반곡마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271		
85	완주	소양	신원	767-34	간판	맑은물					
86	완주	소양	신원	8-1	통신주			KT			
				8-1	통신주			KT			
				8-1	통신주			KT			
87	완주	소양	신원	8-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88	완주	소양	신원	10-5	통신주			KT			
				10-5	통신주			KT			
89	완주	소양	신원	10-5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10-5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90	완주	소양	신원	10-6	통신주			KT			

연 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 계 인			비고
	군	면	리	지 번			성명 또 는 명칭	주 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91	완주	소양	신원	10-7	통신주		KT			
92	완주	소양	신원	10-7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93	완주	소양	신원	11-1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1-1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94	완주	소양	신원	12-3	통신주		KT			
95	완주	소양	신원	12-3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96	완주	소양	신원	30-1	통신주		KT			
				30-1	통신주		KT			
				30-1	통신주		KT			
97	완주	소양	신원	30-1	오수맨홀		완주군			
98	완주	소양	신원	30-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30-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99	완주	소양	신원	31-5	통신주		KT			
100	완주	소양	신원	35-3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01	완주	소양	신원	38-7	보조지주		한국전력공사			
102	완주	소양	신원	38-9	통신주		KT			
103	완주	소양	신원	38-9	한전주	H:15.0	한국전력공사			
104	완주	소양	신원	산107-2 1	통신주		KT			
105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통신주	H:8.0	KT			
105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통신주	H:8.0	KT			
				산108-1	통신주	H:8.0	KT			
106	완주	소양	신원	산108-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산108-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107	완주	소양	신원	산116-1	통신주		KT			
108	완주	소양	신원	산116-1	보조지주	H:12.0	한국전력공사			
109	완주	소양	신원	산132-5	오수맨홀		완주군			
110	완주	소양	신원	산132-5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111	완주	소양	신원	544-7	통신주		KT			
112	완주	소양	신원	545-13	통신주		KT			
113	완주	소양	신원	555-2	보조지주		한국전력공사			
114	완주	소양	신원	570-3	방법등		완주군			
115	완주	소양	신원	570-3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116	완주	소양	신원	570-8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17	완주	소양	신원	570-11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18	완주	소양	신원	687-8	신호등		국(건설부)			
119	완주	소양	신원	694-6	통신주		KT			
120	완주	소양	신원	694-6	제수변		완주군			
121	완주	소양	신원	694-10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122	완주	소양	신원	694-11	방범등		완주군			
123	완주	소양	신원	694-17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124				702-4	제수변		완주군			
				702-4	제수변		완주군			
125	완주	소양	신원	702-10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126				703-5	제수변		완주군			
				703-5	제수변		완주군			
				703-5	제수변		완주군			
127	완주	소양	신원	703-9	상수맨홀		완주군			
128	완주	소양	신원	711-4	통신주		KT			
129	완주	소양	신원	711-8	오수맨홀		전북			
130	완주	소양	신원	711-8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131	완주	소양	신원	711-9	한전주	H:12.0	한국전력공사			
132	완주	소양	신원	727-2	도로반사경		완주군			
133	완주	소양	신원	727-4	오수맨홀		완주군			
134	완주	소양	신원	734-1	통신주		KT			
135				734-1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34-1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136	완주	소양	신원	738-6	통신주		KT			
137	완주	소양	신원	738-6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138	완주	소양	신원	750-2	통신주		KT			
139	완주	소양	신원	750-2	오수맨홀		완주군			
140	완주	소양	신원	750-2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141				767-1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767-1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767-1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142	완주	소양	신원	767-4	오수맨홀		완주군			
143	완주	소양	신원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H:8.0	KT			
				767-18	통신주	H:8.0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767-18	통신주		KT			
144	완주	소양	신원	767-18	CCTV		완주군			
145	완주	소양	신원	767-18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2.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4.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12.0	한국전력공사			
				767-18	한전주	H:8.0	한국전력공사			

연번	물건의 소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지번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의 종류 및 내용	
146	완주	소양	신원	767-22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47	완주	소양	신원	767-22	오수맨홀		완주군			
148	완주	소양	신원	767-22	보조지지주		한국전력공사			
149	완주	소양	신원	767-34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50	완주	소양	신원	767-53	통신주		KT			
				767-53	통신주		KT			
151	완주	소양	신원	767-53	오수맨홀		완주군			
				767-53	오수맨홀		완주군			
				767-53	오수맨홀		완주군			
152	완주	소양	신원	767-53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767-53	한전주	H:9.0	한국전력공사			
				767-53	한전주	H:13.0	한국전력공사			
153	완주	소양	신원	767-61	통신주		KT			
				767-61	통신주		KT			
				767-61	통신주		KT			
154	완주	소양	신원	767-61	제수변		완주군			
				767-61	오수맨홀		완주군			
154	완주	소양	신원	767-61	오수맨홀		완주군			
155	완주	소양	신원	767-61	한전주	H:16.0	한국전력공사			
156	완주	소양	신원	767-72	오수맨홀		완주군			
				767-72	방법등		완주군			
				767-72	버스정류장		완주군			
157	완주	소양	신원	767-72	한전주	H:10.0	한국전력공사			
158	완주	소양	신원	767-75	도로반사경		완주군			
				767-75	제수변		완주군			
				767-75	제수변		완주군			
				767-75	제수변		완주군			
159	완주	소양	신원	767-78	통신주		KT			
160	완주	소양	신원	777-2	오수맨홀		완주군			
				777-2	오수맨홀		완주군			
576건										

[붙임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군계획시설(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소	최대			
신설	-	용문천	지방하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108-20번지	완주군 소양면 소양천 (지방)합류점	-	4.0	4	58	124,914	신설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	용문천	- 신설 : 124,914㎡ - 시설명 : 용문천 - 시설종류 : 지방하천 - 기점 :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108-20번지 - 종점 : 완주군 소양면 소양천(지방) 합류점 - 연장 : 4.0km - 폭원 : 4~58m - 면적 : 124,914㎡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용문천의 본류 및 주요지천, 토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하천) 결정을 하고자 함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7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도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없더라도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적용범위에서 주소 요건을 삭제(안 제3조)
- 나.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관련한 근거 조례 추가(안 제7조 제2항)
- 다. 띄어쓰기, 용어 및 맞춤법 정비(안 제2조, 제5조의2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법제심사),예산과(재정부담),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라. 입법예고 : 2024년 2월 16일 ~ 3월 7일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전화 : 063-280-3788, FAX : 063-280-320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063-280-3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조례에서”로,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
를”을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를 “얕은 사람으로서, 전북자치도
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
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
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 조례에서 ----- -----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 -.</p> <p>제3조(적용범위) ① ----- -----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p> <p>② ----- <u>않은 사</u> <u>람으로서,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u> <u>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u>-----.</p> <p>제5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노</u> <u>리집</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p>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8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와 일치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소비자피해 방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3조제6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12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소비자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시책추진 및 지역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의무 사항을 책무 사항으로 개정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정보제

공을 위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의 공표 등’을 추가함(제3조 제목, 본문 개정 및 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소비자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함(안 제12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 : 일자리민생경제과, 법무행정과, 예산과 등과 협의 중

라. 입법예고 : 2024년 2월 16일 ~ 3월 7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전화 : 063-280-3256, FAX : 063-280-32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063-280-3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도지사의 의무)”를“(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를 “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의 공표 등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지사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의 증진과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책무-----.</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의 공표 등</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일자리민생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문혜숙(063-280-3256)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9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1. 제안이유

재난현장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보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인적·물적 자원의 보상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나. 협의 : 여성가족과, 감사관, 예산과, 인권담당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다. 입법예고 : 2024. 2. 16. ~ 3. 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참조: 119대응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119대응과 대응총괄팀 (전화 063-280-3838 / FAX 063-289-100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119대응과 대응총괄팀(063-280-38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 ② 제6조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 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 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별지 제9호서식)
-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
 - 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
 - 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보상청구)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 2. 부상자
-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
-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 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 9. 현장 조사
- 10.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20 . . . : 분경 전북특별자치도 _____ 시·군 (_____)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 등(사용, 손실, 인적피해)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고유형				
사고발생 장소 (대상)와 관계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이웃주민	<input type="checkbox"/> 행인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민간자원 제공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인적피해자	주소 :			
사용자원 및 활동사항 (부상발생 시 내용 포함)				
손실정도 (손실장비, 부상내용 등)				
<input type="checkbox"/> 사용시간 <input type="checkbox"/> 활동시간	00시간 (20 ____년 ____월 ____일 ____:00 ~ ____:00)			
<input type="checkbox"/> 사용배경 <input type="checkbox"/> 활동배경				
<input type="checkbox"/> 사용효과 <input type="checkbox"/> 활동효과				
청구내용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그 밖의 의견				
증명서류	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 통비 등은 제외)			

위와 같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부상 또는 본인소유의 물품을 사용하였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

청구자 : _____ (서명)

○○소방서장 귀하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유자격			
응급 조치	종사기간부터까지		
	종사장소			
	종사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

직인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응급부담	기 간	. . .부터 . . .까지		
	장 소			
	내 용			
그 밖의 사항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소방서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6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활 용 민간자원	보상대상 심의내용			보상일자	보상내역
			심의일자	심의결과	사 유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20 . . .

재 난 개 요 : 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부 서 별	시각 (간)	운 영 내 용	판단근거
	18:45	상황접수 및 각 부장 소집 상황판단회의, 긴급구조 통제 단 운영	지휘통제계획
	19:05	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19:30	전체상황 재판단	

○○○○ 부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연번	일시	품명	수량	지원자			비고 (성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

연번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단체	전화번호	비고 (성별)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연번	성명	배치장소	배치일시	철수일시	활동임무	비고 (성별)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인적·물적 민간자원)

연번	일시	장소	지원내용 (인적·물적 민간자원)	활동내용 또는 활용내용	지원자			비고 (성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는 경우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조례 제13조제3항)

3. 작성자

- 전북특별자치도 119대응과 소방경 조창현(280-3838)

붙임2	관계법령
------------	-------------

□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과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나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 4.>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치료 및 보상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2021. 4. 13.>

③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3., 2021. 4. 13.>

④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 8. 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10. 12. 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1항 3호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피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1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 - 63호
- 2. 단체명칭 :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 8길 52(요천동)
- 4. 대표자 : 박종일
- 5. 주된 사업
 - 국민의식 개혁운동, 문화시민 운동, 국민통합 운동 등
-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이 권 재	박 종 일	

- 7. 허가(변경)일자 : 2024. 2. 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5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 변경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 1. 등록번호 : 제2016-1-전라북도-1호
- 2. 단체명칭 : 정읍자율방범연합대
- 3. 대표자 : 조진영
- 4.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로 9 (연지동)
- 5. 주된사업
 -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 및 교통 캠페인 행사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 사업
 - 재난·재해 시 임명 구조 활동
 - 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 운용 등

6. 변경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정읍자율방범연합회	정읍자율방범연합대	

- 7. 최초등록연월일 : 2016. 1. 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0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4-6호
- ② 법인명칭 : 사단법인 전북스포츠안전협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류 승 민
 - 생 년 월 일 : 1986. 7. 11.
- ④ 허 가 일 : 2024. 2. 7.
- ⑤ 설립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사후대응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안전한 체육 활동 지속 및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6일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정비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4년 2월 16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완주소방서	완주소방서대응예방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대응예방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대응예방과광리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		
공인명	인영	
완주소방서	완주소방서의무소방대보통공시상심사위원회의인	
〃	완주소방서의무소방대보통공시상심사위원장의인	

폐 기 공 인		
〃	완주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순창소방서	순창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시 공고 제2024-30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2) 명 칭 : 선유도 수산물센터 증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항만 : A = 20,860.7㎡

2)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 1,404.30㎡(기존, 주1동~주5동) + 175.21㎡(금회 증축, 주2동)

- 건축연면적 합계 : 1,579.51㎡(5개동)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선유도 어촌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50-2)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항만:선유도항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	474	잡	20,860.7	20,860.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계	1필지		20,860.7	20,860.7						

완주군 고시 제2024 - 14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용진 소로2-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용진 소로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2월 1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용진읍 구역리 1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용진 소로2-1호선)
 - 명 칭 : 용진 소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L=191.2m B=8.75~9.0m A=2,521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성명 : 태운종합건설(주) (대표:전미경)
 - 나. 주소 :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71(태성리, 1층)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동리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용진읍 구역리	6-4	도	565	34	-	완주군	-	-	-	
2	용진읍 구역리	6-5	전	14	14	전주시 덕진동1가 1117-*	정병옥	-	-	-	
3	용진읍 구역리	6-6	도	183	40	-	완주군	-	-	-	
4	용진읍 구역리	6-9	도	192	50	-	완주군	-	-	-	
5	용진읍 구역리	7-1	도	621	102	-	완주군	-	-	-	
6	용진읍 구역리	10-2	답	4,285	148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70번길 39-**, 30*동 11**호 (장덕동,*덕마을 대방노블랜드3 차아파트)	김민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지상권	
7	용진읍 구역리	10-4	도	35	22	-	완주군	-	-	-	
8	용진읍 구역리	10-5	답	1,230	1,230	전북 완주군 용진읍 목효로 20*	농업회사법인 도울유한회사	-	남원새마을금고	근저당 지상권	
9	용진읍 구역리	12-2	답	305	305	완주군 봉동읍 고산천로 12*	태운종합건설주식회사				
10	용진읍 구역리	14-1	전	9,521	71	완주군 용진면 구역리 4*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목효로 20*	진주정씨동은공후손익산종회 이만순				
11	용진읍 구역리	903	도	1,428	97	-	국(건설부)	-	-	-	
12	용진읍 구역리	905	구	2,141	97	-	국(농수산부)	-	-	-	
13	용진읍 구역리	908-12	구	9,805	311	-	국(농수산부)	-	-	-	
합 계			-	30,325	2,521	-	-	-	-	-	

진안군 고시 제2024-24호

진안 군계획시설(체육공원:월랑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진안군 고시 제2023-76호(2023. 6. 23.)로 군계획시설(체육공원:월랑공원) 결정(변경)된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공원:월랑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체육공원:월랑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진 안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진안 군계획시설(월랑공원:체육공원)사업
 - 나. 명 칭 :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규모 : 367,250㎡(금회 사업면적 : 7,31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진안군수
 - 나.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7. 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합 계					27,354	7,314		
1	진안	군상	340	공	1,892	147	진안군	
2	진안	군상	342	전	86	29	진안군	
3	진안	군상	343	전	365	365	진안군	
4	진안	군상	343-1	전	307	228	진안군	
5	진안	군상	343-2	전	405	12	진안군	
6	진안	군상	344	전	523	478	진안군	
7	진안	군상	344-1	전	208	208	진안군	
8	진안	군상	344-2	전	555	555	진안군	
9	진안	군상	344-3	전	694	694	진안군	
10	진안	군상	344-4	전	436	190	진안군	
11	진안	군상	344-5	전	793	769	진안군	
12	진안	군상	345	전	159	159	진안군	
13	진안	군상	346	전	2,433	1,666	진안군	
14	진안	군상	372-3	전	3,303	467	진안군	
15	진안	군상	376-7	답	5,678	73	진안군	
16	진안	군상	산107-4	임	1,884	1,068	진안군	
17	진안	군하	64-1	전	7,633	206	진안군	

임실군 공고 제2024-190호

임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임 실 군 수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3-1답 일원	14,645	증)1,009	15,654	임실군고시 제2023-86호 (2023.09.15.)	

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면적변경 - 기정) 14,645㎡ → 변경) 15,654㎡ (증. 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미생물체재 생산 확대 공급으로 토양개량과 작물의 면역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급회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②	주차장	임실읍 이도리 253-1 일원	4,530	감)2,098	2,432	임실군고시 제2018-49호 (2018.01.19.)	

나.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②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53-1번지 일원 ○ 면적 변경 (감 2,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4,530㎡ - 변경 : 2,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성되어 운영중인 주차장과 주변의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임실 등기소 주변의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고, 중심지 내 주차장 수요는 임실 축협주변에 추진 중인 주차장 시설로 대체하여, 장래 개발계획이 없는 주차장 미개발부지를 제척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시설 발생 사전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2. 16. ~ 2024. 3. 1.(14일간)

나. 열람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재생팀

다. 열람내용 : 임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안)

4. 군관리계획 결정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5.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기재 후 서면 제출

나. 제출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재생팀(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6. 기타사항

가.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건설과 도시재생팀(☎063-64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 - 4 호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주만성초등학교장
2024년 2월 16일

- 1. 공인 폐기일: 2024년 2월 29일
- 2. 폐기 내역

폐 기 공 인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 폐지>	공인 인영
	